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가합60245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1. 주식회사 B

2. C

3. D

4. E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변론 종결2022. 5. 27.

판결 선고2022. 7.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731,839원과 그 중 279,338,190원에 대하여 2010. 4. 28.부터 2010. 12. 2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14. 접수 제126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과 피고 C, D의 각 연대보증

원고는 2007. 9. 28.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석유제품 매매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F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물품 판매대금 채무의 지급 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주식회사 F, 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 보험기간 2007. 9. 28.부터 2009. 9. 27.까지인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에다가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7. 12. 14.경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F에게 외상물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9. 11. 24.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수령권자인 G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 중 20,661,810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2010. 4. 27. 기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원리금 채무는 합계 301,731,839원(원금 279,338,190원 + 지연손해금 22,393,649원) 상당이었다.

나. 선행판결 확정

원고는 피고 회사, C,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0가단446699)를 제기하여 2011. 7. 15. '피고 회사,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731,839원과 그 중 279,338,190원에 대하여

2010. 4. 28.부터 2010. 12. 2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선행판결은 원고와 피고 회사, C 사이에는 2011. 8. 9.경, 원고와 피고 D 사이에는 2011. 8. 19.경 각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밖의 권리관계

피고 D는 2009. 2.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9. 4.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언니인 피고 E 앞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라 피고 E가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피고 D, E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4. 1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피고 E를 갑으로 하고 피고 D를 을로 하여, 갑과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금전소비대차) 을은 갑에게 2004. 3.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아래의 채무를 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 채권액 150,000,000원
- 변제기 2011. 4. 12.
- 이자 연 5%(단 이자는 매월 15일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한다)

제2조(근저당권 설정)

1. 을은 제1조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갑을 저당권자로 하는 순위번호 제3번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2. 저당권설정등기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3조(기한의 이익 상실) 을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의 통지나 최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저당권을 실행 당하더라도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1. 이자 지급을 2회 연체한 때

2.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D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무자 피고 D,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 D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다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관련 지급명령 확정

피고 E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1. 1. 11. 피고 D를 상대로 대여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차56)하여 2021. 1. 14.
지급명령(이하 '관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2021. 2. 5. 관련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서대문구청장,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선행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에 관한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는 원고에게 선행판결에서 확정된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이행으로 301,731,839원과 그 중 279,338,1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자신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할 당시 대가도 받지 아니한 채 남편인 I가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었을 뿐인데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어 변론을 제대로 못하여 선행판결이
선고되었고, 1) 원고가 보증보험사고 발생 위험에 관하여 자신에게 아무런 예고도 하지 아니한 채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은 이율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판력 있는 판결 등이 있는데도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제기된 소송에서 당사자는 기판력에 기속되어 그와 저촉,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다만 앞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이를 이유로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를 다룰 수 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D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모두 선행판결에서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고 볼 수 없다.2)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D는 피고 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1,731,839원과 그 중 279,338,190원에 대하여 2010. 4. 28.부터 2010. 12. 2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제1조에서는 피고 D가 피고 E에게 차용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매월 15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제3조 제1호에서는 피고 D가 이자 지급을 2회 연체한 때에는 피고 E의 통지나 최고 없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D가 2010. 7. 31.경 피고 E에게 이자를 지급한 이후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문언 자체로 피고 D가 이자 지급을 2회 연체한 경우 피고 E의 통지나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 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국 늦어도 위 2010. 7. 31.경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0. 10. 1.경4) 부터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E의 피고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20. 12. 1.경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의 피고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5)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피고 D와 그 남편인 I, 딸인 J이 2011. 2. 20.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피고 E에게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일부 변제하였다'면서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올라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 명의의 계좌에서 2011. 6. 27. 2,000,000원, 2011. 7. 7. 2,100,000원, 2011. 7. 29. 1,400,000원이 각 인출된 사실, 피고 D가 2011. 2. 20. 100,000원, 2020. 9. 28. 100,000원, 2020. 12. 17. 50,000원을, J이 2018. 7. 2. 300,000원을 각 피고 E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올라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는 피고 D에 대한 관련 지급명령 신청 당시 스스로 '피고 D가 2010. 7. 31.까지만 약정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6) 피고 D, E의 자매관계, 위 각 돈의 인출 또는 송금 시기와 액수 등을 모두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올라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0. 7. 31.경 이후로 피고 D가 직접 또는 I, J을 통하여 피고 E에게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E의 피고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 D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369조에서 정한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 D는 피고 E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 D의 채권자로서 피고 D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7) 인 피고 D를 대위하여 피고 E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D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E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형석

판사이경민

판사이현지

별지

- 1) 선행판결 선고 당시 피고 D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다투었으나 패소하였고, 항소하지 아니하였다(갑 제1호증 참고).
- 2) 법률의 변경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의 변경으로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행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법상의 비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등 참조).
- 3)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등 참조).
- 4) 원고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0. 10. 1. 또는 2009. 11. 17.'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2009. 11. 17.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제3조 제2호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1. 16.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령 '2009. 11. 17.'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그 이후인 2010. 7. 31.경 피고 D가 피고 E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무렵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이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0. 10. 1.'로 보아 판단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다.

5)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405조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대위행사한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피고 D는 2020. 12. 7.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음으로써 원고가 피고 D를 대위하여 피고 D가 피고 E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고 있음을 알았으므로, 그 이후에 관련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참조).

6) 피고 D도 이 사건 2021. 1. 5.자 답변서에서 '피고 D가 피고 E에게 차용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E에 대한 이자지급내역표와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자신이 피고 E에게 2009. 4. 16.까지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다.

7) 피고 D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채권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 D가 무자력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E도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